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세요.

지난 9월 1일 개정된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와 관련하여 확정된 고시와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해드립니다.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9.14.(목)~학칙 개정 전 또는 10.31.(화)입니다. 추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변경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. 고시 전체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.

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

The notice is divided into four main sections: **교사** (Teacher), **학생** (Student), and **학부모** (Parent). Each section lists specific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, such as separating students during lessons, ensuring safety during supervision, and communicating with parents.

☞ 뒷면을 꼭 읽어주세요.

정교초등학교 「학생생활지도 고시」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(9.14.학칙 개정전 또는 10.31.)

[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]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	
12주 6항 지도(분리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)	1호 (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) 2호 (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)	수업 중 자리 이탈,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내 다른 좌석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	학생 본인 준비
	3호 (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)	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학생을 지도·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에게 요청 후, 교무실무사 또는 수업없는 교사 또는 교감이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4호 (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)	1호~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수업 시간에 지각·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관침해 등의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흡연 및 기타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①교무실 ②그외 교감지정장소 (60분 이내)	주의를 준 후 실시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

[소지품 분리 보관]

요건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(휴대전화 등 통신기기)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
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(총기, 레이저 빔 기기 등)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술, 담배 등)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	3일	교무실 (생활안전부)	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찾아가.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(성냥, 라이터, 도박에 관한 물건 등 학생생활규정 29조(소지금지물품))			

2023. 9. 14.

정 교 초 등 학 교 장 (직인생략)